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28 선고 2024가단530932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2024. 11. 14.

판결 선고2024. 11. 28.

주 문

1. 피고 B와 E(F생) 사이에 2019. 8. 1.부터 2024. 4. 15.까지 체결된 증여계약을 7,4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B는 원고에게 7,4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C와 E(F생) 사이에 2019. 8. 1.부터 2024. 4. 15.까지 체결된 증여계약을 22,792,5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C는 원고에게 22,792,5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피고 D와 E(F생) 사이에 2019. 8. 1.부터 2024. 4. 15.까지 체결된 증여계약을 5,8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D는 원고에게 5,8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 위 적 청 구 취 지

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다.1)

예 비 적 청 구 취 지

『E(F생)과 2019. 8. 1.부터 2024. 4. 15.까지, ①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7,400,000원에 대한 증여계약, ②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2,792,591원에 대한 증여계약, ③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5,800,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.』 및 주문 제1 내지 3항의 각 후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,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).

2. 적용 법조

가. 피고 B, 피고 D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C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오형석

별지

1) 2024. 10. 3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 '변경된 주위적 청구취지' 중 1항 기재 부분을 주문 제1 내지 3항의 각 전문과 같이 선행한다.